

[세션 1] 발제문

단말기 유통법 시행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영향

변정욱 교수
(국방대학원)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친 효과

국방대학교 변정욱

목차

- 단말기유통법 제정 배경
-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이동통신시장 주요 지표에 미친 영향
- 결론 및 시사점

단말기유통법의 제정 배경

●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부작용

- 보조금 혜택의 이용자 차별
 -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으로 일부 이용자에게 보조금 혜택이 편중
 - 가계통신비 증가와 요금경쟁 억제
 - 고가요금제 가입을 전제로한 보조금 마케팅
 - 단말기 잦은 교체에 따른 자원낭비와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 파이낸셜뉴스(2014.11.16) 한국, OECD국가 중 단말기 교체주기 3년째 1위, ...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중 77%가 1년 안에 휴대폰을 바꾼 것으로 조사
 - ZDNet Korea(2019.4.25) 통계청에 의하면 '18년 가계통신비는 전년대비 6.6% 감소, 통신장비 비용은 10.3% 증가.
-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비용이 아닌 단말기 구입비 절감을 위한 정책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지적"

● 단말기 보조금 경쟁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서는?

- 보조금 혜택의 이용자 차별 →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금지,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수 있도록 정보제공
 - 무엇이 부당한 차별인가? : 가입유형, 요금제, 신체조건 등에 따른 차별, 과도한 금액(상한액 설정)
- 가계통신비 증가와 요금경쟁 억제 → 고가요금제·불필요한 부가서비스 선택 유도 차단, 요금할인 형태의 대안적 혜택 제공
- 단말기 잦은 교체에 따른 자원낭비와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 과도하지 않은 보조금 지급(상한액 설정), 단말기 교체가 불필요한 이용자에게 대한 대안적 혜택 제공(요금할인 선택 옵션)

● 단말기유통법 시행(2014.10.1)

① 단말기 유통법 주요 준수 사항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② 부당한 차별적인 단말기 지원금 지급 금지 (법 제3조, 제9조)
 - ✓ 가입유형, 요금제,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금지
 - ✓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차별적인 지원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 할 수 없음
 - 미래부 고시에 의거 비례성 원칙을 충족하는 범위 내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은 허용
- ③ 지원금 지급 요건 및 내용 공시 (법 제4조)
 - ✓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의 상한액은 25만원 ~ 35만원
 - ✓ 시된지 15개월 경과한 단말기는 적용대상 제외, 상한액은 6개월마다 조정 가능(방통위)
 - ✓ 단말기명(폰네임포함), 출고가, 지원금, VAT포함 판매가(할부원금), 추가지원금을 포함하여 가입기간 및 요금제별, 기준별 정보 영업장내 게시 (최초 이동통신사 공시일부터 7일간 유지)

단말기명 (폰네임) 출고가						
요금제	12개월 기준			24개월 기준		
	지원금	추가 지원금	VAT포함 할부원금	지원금	추가 지원금	VAT포함 할부원금

- 온라인 판매시 온라인 사이트 내에 해당 기준에 따라 게시
- ✓ 공시 관련된 자료는 3개월간 보존
- ④ 공시 지원금의 15% 이상 지급 금지 (법 제4조)
 - ✓ 대리점 및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의 공시 지원금의 15%를 추가 지급 가능
 - ✓ 추가 지급시 공시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내 게시해야 함
- 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법 제5조)
 - ✓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요금제, 부가서비스 가입 강요 및 일정기간 사용 의무 부과 등의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 이를 위반한 개별계약은 효력이 없음

- ⑥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 대한 상응하는 요금 할인 등 혜택 제공 (법 제6조)
 - ✓ 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단말기 및 개통 후 24개월 경과 단말기만 가능
 - ✓ 24개월 약정이 적용된 기준요금할인율의 5% 범위내에서 요금 할인 제공 (이동통신사별로 정함)

- ⑥ 단말기 구입비용과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을 구분 고지 (법 제7조)
 - ✓ 약정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구입금액과 결합하여 지원금으로 오인케 하는 행위 금지
- ⑦ 할부 판매시 할부기간 및 추가 청구 비용 (할부이자 등) 명확한 고지 (법 제7조)
 - ✓ 단말기를 할부판매 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따른 할부이자 등 추가 청구 비용을 명확하게 이용자에게 설명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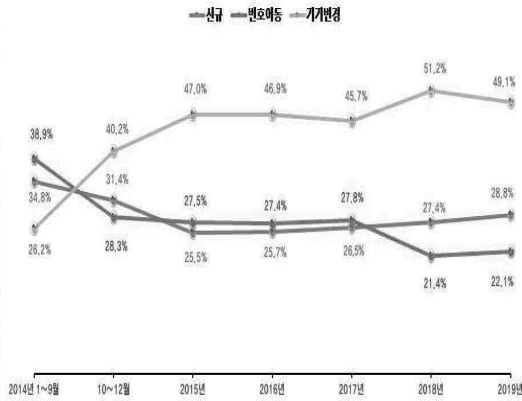
- ⑧ 대리점과 거래 전 판매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승낙 후 영업 가능 (법 제8조)
 - ✓ 판매점은 영업전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낙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영업장 및 판매사이트 내에 게시해야 함
 - ✓ 대리점은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할 수 없음

- ⑨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게 차별적 지원금 및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권유 강요 불가 (법 제9조)
 - ✓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 및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권유하도록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없음
- ⑩ 방통위는 지원금 지급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 우려시 대리점 및 판매점까지 긴급중지명령 가능 (법 제1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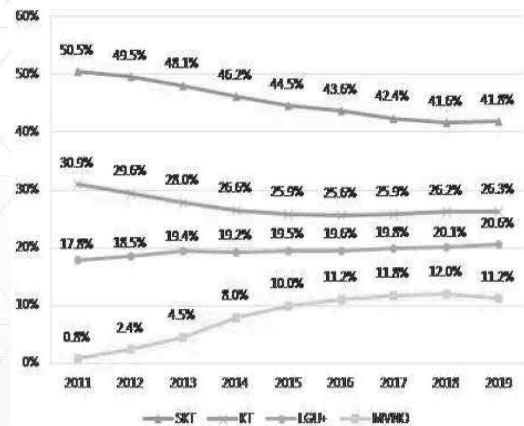
단말기유통법 시행이 이동통신시장 주요 지표에 미친 영향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이 개선되었나?

<이통사들의 보조금 경쟁이 완화되었나?>



<시장집중도가 개선되었나?>



• 이용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요금제 선택, 부가서비스 선택에 미친 영향

<서비스 개통 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평균 가입요금 수준	42,565원	45,155원	38,695원	40,101원	41,345원
고가 요금제(순액 6만원 이상) 가입 비중	66.9%	33.9%	6.3%	6.6%	14.3%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43.2%	37.6%	12.4%	6.0%	6.2%

<서비스 개통 시 고가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

주: 2014년 평균 가입요금 수준과 고가 요금제(순액 6만원 이상) 가입 비중은 7~9월 기준이며, 개통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은 1~9월 기준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7)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9. 29), "단말기유통법 시행시점 통계지표" 재구성

- 선택약정할인(지원금 상응 요금할인) 선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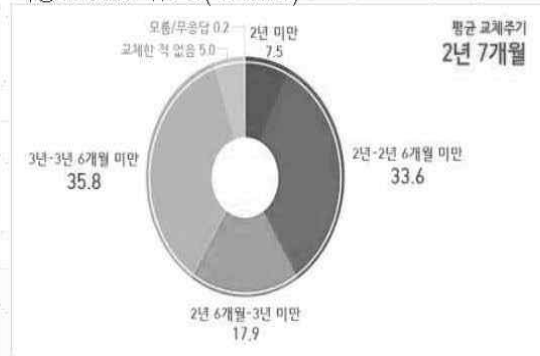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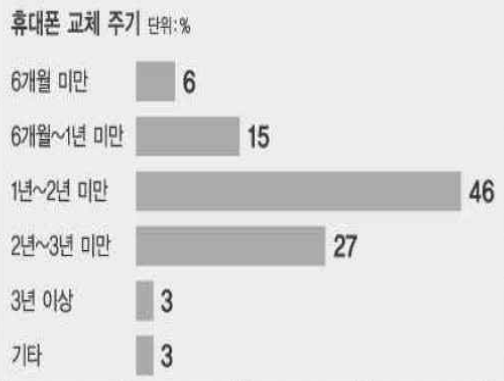
> '14년 12% → '15년 4월 20% → '17년 9월 25%

'19년 7월 2,500만명 돌파 《연합뉴스》(2019.8.25.), "이통요금 25% 할인 가입자 2천500만명 돌파... 5G 후 증가세 둔화"

- 단말기 교체주기에 미친 영향

"한국 휴대폰 교체주기 일본의 절반... 10명 중 7명이 약정 만기 전에 바꿔" 경향신문('12.10.4)

"스마트폰 평균 교체주기 2년7개월...3년이상 사용도 35%" 뉴스1('17.3.21)



단 12세 이상 스마트폰 보유자의 스마트폰 교체주기 조사 결과, 2017.3.21(뉴스1) 자료제공=미래형조과라부 한국인터넷진흥원 © News1

*미국, 영국 이어 세계 3위, 단말기 구입비용 연간 12조원
스마트폰 평균 교체주기 2년7개월...3년이상 사용도 35%

*단통법, 스마트폰 사양의 고평준화로 교체주기 증가

• 이동통신사업자에 미친 영향

- 과도한 지원금 경쟁이 감소, 중저가 단말기·요금제 수요가 증가

⇒ 요금 및 서비스 경쟁 여건이 조성, MVNO 업체에서도 기본료 0원 요금제 출시

• 단말기제조사에 미친 영향

- 출고가/지원금 구조 투명화 ⇒ 좋은 성능의 중저가폰을 출시하기 시작 ⇒ 단말기 판매 비중에서도 중저가 단말기 판매 비중 증가

<중저가(출고가 50만원 미만) 단말기 판매 비중 추이>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7월
비중 (%)	16.2%	21.5%	33.4%	34.3%	34.1%

자료: 국회입법조사처(2017)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7. 9. 29), "단말기유통법 시행시점 통계지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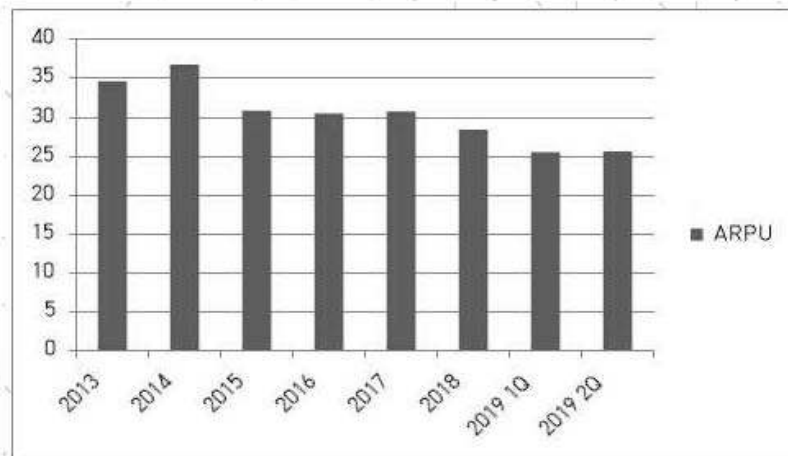
- 가계통신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 저가요금제 선호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등 통신소비 변화와 단말기 구입비 경감(저가단말 선택, 교체주기 연장)에 따라 가계통신비가 감소 추세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통신장비 (단말기, a)	9,456	23,766	22,676	19,224	31,943	35,223	28,313
통신서비스 (통신사요금, b)	143,098	126,297	124,741	124,496	105,527	98,614	94,477
우편(c)	238	287	308	281	368	270	216
통신비(d=a+b+c)	152,792	150,350	147,725	144,001	137,838	134,107	123,006

주: '17년, '19년 이후 통계 조사방식 변화로 이전 결과와 비교시 유의 필요
 자료: 통계청, ('17년 이전) 전국 2인 이상 명목 기준, ('17년 이후) 전국 1인 이상 명목 기준

- 2013년 대비 2019년 19.5% 감소

- ARPU 추이 (\$US/Mon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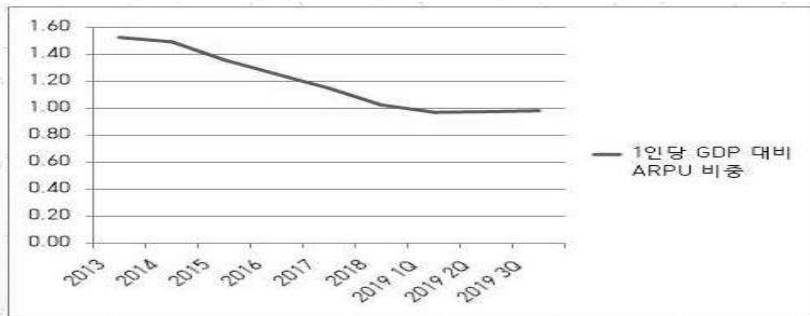
Global Wireless Matrix (2020.1)

- 2013년 (\$34.59) 대비 2019년 2Q (\$25.73) 25.6% 감소

- 소득(1인당 GDP) 대비 ARPU 추이 (₩/Month)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Q	2019 2Q	2019 3Q
1인당 GDP(₩) A	2,400,091	2,566,555	2,700,390	2,832,315	2,974,651	3,055,000	3,075,070	3,075,070	3,075,070
ARPU(₩) B	37,065	30,352	36,035	35,525	34,203	31,360	29,096	30,022	30,239
B/A (%)	1.53	1.49	1.36	1.25	1.15	1.03	0.97	0.98	0.98

Global Wireless Matrix (2020.1)



결론 및 시사점

-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이러한 가계통신비의 감소는 요금 및 단말기가격 인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소비(단말기 교체주기 연장, 저가 단말기 선택 증가, 부가서비스 선택 감소) 축소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
 - 이러한 특성에 따라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보조금을 주고받지 못하는 불만이 해소되지 못해 단통법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임
- 요금 및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으므로 어떤 토끼의 편익이 더 큰지 판단이 필요
 - 단통법의 폐지 또는 완화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치중할 경우 가계통신비 증가 우려
 - 단통법 규제를 유지/강화할 경우 불법 보조금 양산과 5G 및 단말기 유통 시장의 위축 우려
- 일방적인 시각보다는 단통법의 장단점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근거한 판단이 필요
 - 가계통신비 인하는 요금/단말기가격 인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비의 감소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임을 인정할 필요
 - 단통법에 의한 소비의 감소가 합리적 소비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용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
 - 전자일 경우 단통법 유지가 필요. 단통법 폐지/완화는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희생하여 시장활성화를 추구하는 것
 - 후자일 경우 단통법 폐지/완화가 필요. 단, 직접적 요금/가격 통제가 불가능하므로 가계통신비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나, 이를 합리적 소비의 결과로 받아들일 필요